

環境保全法令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연재 V>

이 質疑·回信集은
'86년 12월 31일 法津 제3903号로 개정된
環境保全法의 제분야에 대하여 同法 개정 이후
'88년 3월 7일까지 環境庁에 관계기관과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된 사항을 庁의 관계부서가 回信한 내용으로
環境保全法令의 순서에 따라 수록한 것이다.

目 次

- | | |
|--------------------------|----------------------|
| 1. 環境영향평가 | 13.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
| 2. 배출시설 | 14. 위반 회수별 부과세 |
| 3. 배출허용기준 | 15. 배출부과금 부과와 행정형벌병과 |
|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16. 명령이행보고 및 확인 |
|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17. 오염물질 측정 |
| 6.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18. 사업장의 종별구분 |
| 7. 방지시설의 설치 | 19. 배출시설 관리인 |
| 8. 공동방지시설 | 20. 비산분진규제 |
| 9. 환경기술감리 | 21. 방지시설업 |
| 10. 배출시설의 설치조사 및 시험가동 | 2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 11.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 | 23. 경과 조치 |
| 12. 개선명령과 개선계획서 | |

17. 오염물질의 측정

가. 同一事業者의 所在地가 다른 事業場에 對한 自家測定 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광주 測定 31612-1739('87.12.10)

回信 : 水管 31612-12119('87.12.19)

2. 質疑內容

同一事業者(大學校)가 經營하는 所在地가 다른 2個의 排出施設이 있는 경우 이중 하나의 排出施設에 달린 부설공해연구소(부속 시험실)로 하여금 다른 排出施設(大學校 부속병원)을 自家測定토록 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2個의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自家測定이 可能하다.

4. 理由

排出施設을 使用하는 事業者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測定代行者로 하여금 測定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지 않도록 스스로 點檢할 의무를 附與하고 있는 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자와 공해연구소의 設置許可를 받은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동일사업자이므로 研究所로 하여금 測定케 하는 것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22條, 同法 施行規則 第37條

나. 一定한 排出口가 없는 경우의 汚染物質 採取方法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시 環境 31814-471('87.8.19)

回信 : 水管 31630-8369('87.9.7)

2. 質疑內容

일정한 排出口(大氣의 경우 연돌, 水質의 경우 집수조) 및 그에 수반된 測定口가 없어 環境汚染公定試驗法에서 정하는 試料採取가 不可能한 경우의 汚染物質檢體採取 및 日일유량 산정방법은?

3. 回信內容

環境汚染公定試驗法에 의한 測定이 可能하도록 조치한 후 檢體採取하고 日일유량산정은 實地調査 結果를 原則으로 하되, 試料採取確認書徵求時 日일조업시간을 기재하여 代表者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基準으로 할 수도 있다.

4. 理由

汚染物質의 檢體採取方法은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이 정하는 方法에 의하여야 하므로 排出口가 없는 경우에는 現場 與件等を 감안하여 排出口(放流口)로 認定되는 지점을 선택하여 同試驗法이 정하는 方法으로 測定이 可能하도록 조치(測定口 및 안전시설설치등)한 후 檢體採取를 하여야 하며, 日일유량산정을 위한 日일조업시간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實地調査 確認結果를 原則으로 하여야 하나, 다텼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試料採取確認書 徵求時 日일조업시간을 記載하여 代表者의 捺印을 받아 이를 基準으로 하여 排出賦課金を 算定할 수 있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22條의 3, 環境廳訓令 第89號

다. 汚染物質 測定代行業體의 變更申請範圍, 讓渡·讓受範圍 및 그 節次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測定 31612-1005('87.7.20)

回信 : 水制 31612-8614('87.9.3)

※ 質疑는 環境廳告示 第86-6號에 의거한 內容이나 同告示가 88.1.6 第87-41號로 改正된 바 回信은 改正된 內容에 의거한 것임.

2. 質疑內容

1) 測定代行者의 變更申告에 關하여

○ 測定代行者의 變更申請範圍는 營業所 變更(名稱, 所在地, 實驗室 所在地)과 지정사항 變更(測定代分行野, 測定代行業域, 지정조건)만에 국한되는지?

○ 第6條 第1項의 變更申請과 第7條에서 정하는 變更申告의 差異는 무엇이며, 代表者 姓名 및 住所變更의 範圍는?

2) 測定代行業體의 양도·양수의 範圍와 節次에 關하여

○ 測定代行業體의 양도·양수의 對象範圍에는 政府로부터 測定代行業體로 지정 받은 권리(피지정권)까지 包含되는지 여부? 包含될 경우 적법한 變更指定方法은?

○ 양도·양수대상이 施設裝備에 한한다면 양도자는 施設裝備만 넘겨주고 被指定權은 당국에 반납해야 될 것인바, 이 때 施設裝備 양수자가 당국에 測定代行業體指定申請을 할 境遇 當局으로부터 어떠한 기득권이 認定되는지?

○ 기득권이 認定된다면 양도·양수를 第6條 第2項이 定한 變更申請으로 處理可能한지 與否

○ 기득권이 認定되지 않는다면 양도자의 被指定權 반납으로 인한 부족정수 指定方法은?

3. 回信內容

1) 測定代行者의 變更申請 및 變更申告에 관하여

○ 測定代行者의 變更申請의 範圍는 測定代行分野, 測定代行區域, 指定條件 등 指定事項의 變更에 한함.

○ 變更申請과 申告의 차이는 變更申請은 申請內容에 對한 指定權者의 變更指定이라는 行政處分을 통하여 効력이 發生하나, 變更申告는 變更內容의 申告만으로 法律的인 効력이 發生함

○ 代表者 姓名 및 營業者 所在地등의 變更이라 함은 양도·양수나 합병의 경우처럼 測定을 받은 法人 實體의 전면적인 變更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法人의 주사무소 이전이나 法人의 의사표시기관인 代表理事가 교체된 경우등을 뜻하며 代表者의 住所變更의 경우는 變更申請이나 申告對象에서 除外되었다.

2) 測定代行業體의 양도·양수의 範圍와 節次에 관하여

○ 測定代行業體指定의 法律的 성질이 混合的 許可인바, 對人的許可 該當部分인 人적요소의 變更은 양수자가 新規로 指定을 받아야 한다.

○ 施設裝備 讓受者에 대한 被指定權認定에 對하여서는 기득권을 行事할 수는 없으나, 合理的인 行政遂行을 위해서는 變更申請節次로 가름하여 處理가 可能하다.

4. 參照條文

環境廳 告示 第87-41號('88. 1. 6)

18. 사업장의 種別구분

가. 大氣排出事業場의 燃料使用量에 따른 種別, 區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民願人

回信: 大管 01254-756('88.1.25)

2. 質疑內容

大氣事業場 種別區分은 年間固體燃料使用量을 基準으로 하는지? 보일러의 施設容量을 基準으로 하는지? 또한 施設容量의 算定은 어떻게 하는지?

3. 回信內容

施設容量을 基準으로 하며, 施設容量의 算定은 排出施設을 100% 稼動할 때의 年間 固體燃料使用量으로 하며, 그 算定方法은 다음과 같다.
年間 固體燃料使用量=時間當 보일러施設容量×24時間/日×365日/年

4. 理由

保全法 施行規則 第37條 別表8 및 同規則 第43條 別表12에 의하면 大氣分野事業場의 種別區分은 年間 固體使用量에 의거 區分하고 年間 燃料使用量 算定은 對象施設의 施設容量을 基準으로 하도록 規定하였으므로 別表8의 (註)3 및 別表12의 (註)1에 의한 施設容量이란 排出施設을 100% 稼動할 때의 燃料使用量으로 보아야 함.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37條(別表8) 및 第43條(別表12)

나. 廢水排出事業場의 種別區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民願人

回信: 水管 31630-866('87. 9. 4)

2. 質疑內容

廢水處理施設의 一般事項이 다음과 같은 排出業所는 몇種 事業場에 該當되는지?

一 廢水處理能力: 1,200 ml/日

一 作業時間: 30日/日

一 廢水處理量: 平均 400-500 ml/日

一 廢水放流量: 없음(處理水を回收하여冷却水로 再使用)

3. 回信內容

廢水處理施設이 設置된 事業場의 規模에 따른 種別區分은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12(註)1”의 規定에 의하여, 實際放流量이 아닌 廢水排出 施設의 施設容量을 基準으로 算定함.

上記 質疑의 경우는 廢水排出量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므로 種別區分을 할 수 없음.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 37 條(別表 8) 및 第 43 條(別表 12)

19. 배출시설관리인

가. 排出施設管理人的 資格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計劃 31602-1154('87. 8.25)

回信: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別表 12(註) 3 號에 該當 하는 경우 環境技士 1 級의 該當分野 技術資格을 複數로 所持한 者 2 人을 두고 있을 경우에도 追加로 選任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選任하여야 한다.

4. 理由

1 日平均 17 時間以上 作業하는 1-2 種 共通事業場의 경우 排出施設管理人是 環境技士 1 級以上의 分野別 技術資格所持者 各 2 人以上을 두거나, 1 級以上 資格所持者 各 1 人과 2 級以上 資格所持者 各 1 人 또는 2 級以上 資格을 複數로 所持한 者 1 人을 選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 43 條(別表 12)

나. 排出施設管理人 法定配置人員 決定을 爲한 事業場 作業時間 判定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計劃 31602-1554('87. 8.25)

回信: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施行規則 別表 12(註) 第 3 號의 1 日 平均 17 時間以上 作業하는 경우의 作業時間이 란 事業場의 操業時間인지? 또는 排出施設管理 人이 防止施設을 稼動하는 時間인지의 與否?

3. 回信內容

1 日平均 17 時間以上 作業하는 경우 作業時間 이란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稼動時間을 말하며 서로 다를 경우에는 稼動時間이 긴쪽을 基準으로 한다.

4. 理由

排出施設管理人的 任務는 防止施設의 稼動 그 자체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稼動을 위한 同施設의 維持管理, 汚染 物質의 自家測定, 其他 運營日誌等 記錄簿의 作成 및 施設의 改善, 代替與否의 判斷 및 報告書作成等의 活動을 遂行하는 것이므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等의 稼動時間이 긴쪽을 基準으로하여 選任하여야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23 條, 同法 施行規則 第 43 條 다. 騒音·振動排出施設管理人的 選任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計劃 31602-1554('87. 8.25)

回信: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1-3 種 事業場에서 水質, 大氣分野의 排出 施設管理人만 選任된 경우 騒音·振動 排出施設 로 인한 問題發生時 어느 排出施設管理人的 責任 인지?

3. 回信內容

騒音·振動 排出施設管理人으로 選任된 者의 책임이다.

4. 理由

騒音·振動 排出施設의 管理人是 排出施設設 置許可를 받은者 또는 許可를 받은자가 被 雇傭 人中에서 임명하는 者가 되기때문에 騒音·振動 排出施設管理人으로 임명받은 자의 責任이다.

5. 參照條文

20. 비산분진의 규제

가. 單純히 가루상물질을 輸送·貯藏하는 境遇도 環境廳告示 第 87-4 호상의 비산분진 輕減措置義務를 負擔하는 “事業者”에 該當하는지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民願人

回信: 大管 01254-8342('87. 9. 7)

2. 質疑內容

告示 第 87-4 號(飛散粉塵發生源 施設管理基準)와 關聯하여 同 告示에서 정하는 飛散粉塵發生源에 該當될 만한 規模의 飛散粉塵 排出施設이나 工事場은 存在하지 않으나, 발생원의 먼지 排出工程의 하나인 輸送이나 貯藏에 該當되는 事業만을 遂行할 경우 同 告示에서 定하는 “事業者”에 該當되는지?

또 가루상물질을 A 地域에서 실어(上積) B 地域에서 내릴(下茄) 경우, 洗輪施設 및 測面 撤水施設을 A 地域에만 設置하여도 되는지?

또는 A, B 地域 모두 設置해야 되는지?

3. 回信內容

○ 귀 質疑內容中の 비산분진 排出工程은 어떤 가루상물질을 얼마나 貯藏 또는 輸送하는지 알 수 없어, 規制對象이 되는 事業者 該當與否를 正確히 判斷하기 어려우며,

○ 上積 및 下茄장소에 設置토록 되어 있는 洗輪·洗車施設은 飛散粉塵 發生與否 및 車輛狀態에 따라 비산분진이 發生되지 않도록 A, B 兩地域 또는 A 地域이나 B 地域중 한곳에 적합하게 施設하여야 할 것임.

4. 參照條文

環境廳 告示 第 87-4 號

나. 飛散粉塵發生源施設의 防止施設 改善工事도 技術監理對象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株) 공영 第 248 號 ('87.9.11)

回信: 大管 01254-9242 ('87.9.27)

2. 質疑內容

技術監理를 받아 레미콘 및 아스콘 工場을 設置稼動중에 있는 工場이 飛散粉塵發生源 施設管理基準 告示에 따라 骨材積置場의 防止施設이 現在 반 상옥施設로 되어 있어 同基準에 適合한 安全 密閉式으로 開善하고자 하는 바, 同施設의 改善工事が 環境技術監理對象인지?

3. 回信內容

環境技術監理對象이 아니다.

4. 理由

骨材積置場(반 상옥)을 完全 密閉式으로 改善하고자할 경우에는 環境廳 告示 第 87-4 號 “飛散粉塵發生源 施設管理基準”에 規定된 施設만 갖추면 되기 때문임.

21. 방지사설업

가. 下水處理場 工事實績을 防止施設工事實績으로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국종건(업무) 第 88-325 號 ('88.1.20)

回信: 綜合 31633-982('88. 1.30)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 第 47 條 및 同法 施行規則 第 53 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環境汚染防止施設業)의 登錄을 必한 者가 施工完了한 下水處管場工事實績은, 同法 第 49 條 第 1 項 6 號의 規定에 의거한 防止施設工事實績에 包含되는지 與否?

工事實績에 包含되지 않는 경우 登錄 取消事由에 該當하는지?

3. 回信內容

工事實績으로 인정할 수 있다. 防止施設業으로 登錄한 者가 1 年以上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에는 登錄取消할 수 있다.

4. 理由

下水終末處理施設은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 5 條 別表 4에 의한 防止施設로 볼 수 없으나, 다만 設計 및 施工方法에 있어서 下水終末處理施設과 水質汚染防止施設의 處理施設이 동일한 方法에 의한다는 점 및 통상적으로 下水終末處理場

建設工事 入札參加條件을 防止施設業 登錄業體(環境, 水質)로 制限하고 있는 點에 비추어, 環境保全法 第49條 第1項 第6號의 해석에 한하여 下水終末處理場 工事實績을 防止施設業 營業實績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判斷된다.

나. 環境技術士의 資格을 認定할 수 있는 要件으로서의 實務經歷의 範圍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영동環境開發 第87-182號('87.10.2)

回信: 綜合 31633-9922('87.10.19)

2. 質疑內容

'79年 2月 학사학위 取得後 大氣汚染防止施設業體에서 4年間 勤務經歷이 있으며, 勤務期間中 '83.8月 環境管理技士1級(水質)을 取得한 후 '84.7부터 3年間 測定代行業體(大氣, 水質)에서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의 環境技術士(水質)의 資格 認定與否

3. 回信內容

測定代行業體(水質, 大氣)에서 勤務한 經歷은 水質分野의 勤務經歷으로 認定할 수 없어 經歷認定資格基準에 未達되므로 環境技術士(水質管理)로 代替認定할 수 없음.

다. 리이스에 依한 確保裝備도 登錄要件으로 定하는 施設裝備로 認定될 수 있는지?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보성 第14號('87. 9.30)

回信: 綜合 31633-9888('87.10.16)

2. 質疑內容

産業育成法 第7條 第2項의 1의 規定에 依한 리이스契約에 依하여 確保한 裝備를 環境保全法 第47條의 規定에 依한 測定裝備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測定裝備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4. 理由

年拂條件附 販賣契約에 依하여 구입한 裝備라 하더라도 持續적으로 排他的인 使用이 可能하

로 測定裝備를 갖춘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2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가. 改善命令等 受命業所에 對한 改善期間중 再點檢 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충남환위 31720-13018('87.12.22)

回信: 大管 31720-144('88. 1. 8)

2. 質疑內容

改善命令 履行完了豫定日을 賦課(排出)期間의 중기로 하여 改善完了前에 이미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業所에 대하여도 同 改善期間中 再點檢 實施 可能與否와 可能하다면 再點檢을 할 수 있는 機關은 指導·點檢 機關인지?

行政處分 機關인지?

3. 回信內容

指導·點檢機關에서 再點檢할 수 있다.

4. 理由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였다라도 排出賦課金 賦課後 汚染物質등의 排出狀態가 當初의 測定時와 달라졌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指導·點檢 機關에서 再點檢하여 再點檢結果 汚染物質 또는 排出物質의 排出量이 當初 測定한 內容과 다른 경우에는 排出賦課金을 調整賦課 또는 還給할 수 있다. 다만, 改善命令 履行完了豫定日 以前에 改善命令 履行報告를 받은 경우와 改善命令 履行完了豫定日까지 改善命令이 履行되지 않은 경우에는 行政處分機關이 再點檢하여 排出賦課金の 調整賦課 또는 還給할 수 있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 13

나. 自進申告機關의 區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원주 지도 36122-685('87. 9. 4)

回信: 法務 02101-9418('87. 9.25)

2. 質疑內容

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자진신고는 排出施設 設

置許可機關에 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指導·點檢機關에 하여야 한다.

4. 理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自進申告는 排出施設의 指導·點檢業務와 關聯되는 事項이므로 指導·點檢機關에 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 5 및 第49條第2項, 環境廳訓令 第89號('87.6.4)

다. 環境支廳長이 指導·點檢한 事業場에 對한 措置意見書 通報節次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부산지도 31601-963('87.7.3)

回信 : 法務 01210-7957('87.8.13)

2. 質疑內容

釜山直轄市長으로부터 排出業所 指導·點檢 結果措置를 市산하 각 區廳에 直接 依賴하여 달라는 要請이 있는 바, 可能與否?

3. 回信內容

市·道知事가 內部委任된 事業場을 明示하여 直接依賴 要請을 한 경우에는 可能할 것이다.

4. 理由

環境支廳長이 行政處分을 要請할 때에는 指導·團束內容과 處理基準 및 措置意見을 添附하여 市·道知事에게 通報하도록 되어있으나, 現實으로는 區廳長, 市長, 郡守에게 위임된 事項을 市·道知事에게 通報하는 데서 오는 行政의 번잡과 處分이 지연되어 排出賦課金이 增加하는 등 民願의 對象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市·道知事가 內部委任된 事業場을 明示하여 市長·郡守에게 直接 區廳長, 市長, 郡守에게 送附하되 그 事實을 市·道知事에게 通報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令 第49條의 2

23. 경과조치

가. 排出許容基準에 對한 經過措置의 適用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民願人

回信 : 水管 01254-8519('87.9.1)

2. 質疑內容

排出施設의 改善이 特殊한 技術이 要하는等 부득이한 事情으로 '87.12.31 까지 개정된 排出許容期準에 적합하게 할 수 없어 '87.8.3 로부터 4月以內에 改善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排出賦課金의 賦課는 改正된 排出許容基準을 適用하는지?

3. 回信內容

改正前의 排出許容基準을 適用하여야 한다.

4. 理由

改正된 排出許容期準에 適合하도록 施設을 改善함에 있어 特殊한 技術要件등의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改善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承認期間까지는 改正된 排出許容基準의 適用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附則 第4條

나. 施行規則 改正前에 改善命令을 받은 施設에 對한 排出許容 基準의 適用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충남환위 31720-1301('87.12.22)

回信 : 大管 31720-144('88.1.8)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施行規則 改正前에 改善命令을 받은 施設에 대하여 同法 施行規則 附則 第4條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改善期間 延長承認을 한 경우에는 改正前의 排出許容基準을 適用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改正前의 排出許容基準을 適用하여야 한다.

4. 理由

環境保全法始行規則 改正으로 인하여 改正된 排出許容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排出施設은 '87.12.31 까지 當該 排出施設을 改正된 排出許容基準에 適合하게 하도록 하였으므로 '88.1.1부터는 改正된 排出許容基準을 適用하여야 하나 施設改善에 特殊한 技術이 要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改正된 排出許容基準에 適合하게 할 수 없는 者는 市·道知事 또는 環境支廳長에게 改善計劃書를 제출하여 承認을 얻도록 하였는 바, 승인을 얻은 排出施設에 對하여서는 承認을 얻은 改善期間까지는 改正前의 排出許容基準을 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附則 第4條

다. 騒音·振動 排出施設의 新規設置許可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동해펄프(株)環境 第790-188('87.10.17)

回信: 水管 31814-10739('87.11.10)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3條(別表2)의 改正에 따라 騒音排出施設과 진동배출시설이 各各 분리 規定되었는 바, 기 許可된 騒音·振動排出施設 및 振動排出施設로 各各 새로이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아야 하는지?

3. 回信內容

새로이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지 아니한다.

4. 理由

騒音·振動排出施設이 各各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改正前의 規定에 의하여 騒音 및 振動排出施設로 設置許可를 받아 既 設置된 것이므로 새로이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을 必要는 없으며, 排出施設 設置許可證을 各各 區分하여 更新交付받으면 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 同法 施行令 第16條, 同法 施行規則 第3條

라. 經過措置期間 以後 許可申請時 許可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住居地域에 있는 工場으로서 環境保全施行規則 附則 第3條에 의하여 새로이 排出施設로 되는 施設(표백시설, 수세식탈취시설등)이 있는 경우 經過措置期間이후에 許可(變更許可包含) 申請時 許可가 可能한지의 與否?

3. 回信內容

經過措置期間 이후에는 許可할 수 없다.

4. 理由

環境保全法施行規則 附則 第3條의 經過措置規定은 이 規則施行日 以前에 設置되어있는 施設에 對하여 그 特權을 認定하여 處理하되 3個月以內에 許可를 받도록 그 기한을 規定하고 있으므로 同 期間經過後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許可官廳은 他法 抵觸與否는 市·道知事의 意見書를 參照하여 處理하여야 할 것이나, 建築法施行令 別表1의 規定에 의하면 住居地域은 環境保全法上의 排出施設을 建築할 수 없는 地域이므로 經過措置期間 이후에는 동 배출시설에 대한 設置許可는 할 수 없다. <끝>

우리모두 환경보전

- 공장·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깨끗이 정화합시다.
- 정화조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청소합시다.
- 합성세제는 포장지의 표시에 따라 알맞게 사용합시다.
-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따로 싸서 버립시다.
- 하천이나 빈터에 오물을 버리지 맙시다.
- 자연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룩합시다.